

#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6,519,688	15,795,591
일반회계	465,142,047	13,954,261
특별회계	61,377,641	1,841,329
공기업특별회계	52,534,209	1,576,026
상수도공기업	20,319,555	609,587
하수도공기업	32,214,654	966,440
기타특별회계	8,843,432	265,303
주택사업	2,727,105	81,8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5,340	4,060
의료급여기금운영	1,099,461	32,98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58,980	16,769
공영개발사업	399,254	11,978
농공지구조성사업	2,859,088	85,773
기반시설	21,348	640
장기미집행	503,280	15,098
수질개선	539,576	16,18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205,18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9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